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15.08.05 조례 제1959호

- 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치매"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, 언어능력, 지남력(指南力),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 다.
 - 2. "치매환자"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.
 - 3. "초로기 치매"란 만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.
 - 4. "치매관리"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·요양 및 조사·연구 등을 말한다.
 - 5. "배회감지(GPS위치추적)서비스(이하 "배회감지서비스"라 한다)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제3조(계획수립 및 군수의 의무) ① 의령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주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·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비용의 지원) ① 군수는 치매 예방, 검진, 진료, 입원 등 치매관리 비용 중 본인 부담금과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, 배회감지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단, 치매 검진비용은 의령군과 협약을 체결한 치매협약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.
 - ② 제1항의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로 3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5조(지원대상)** 제4조에 따른 비용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단, 치매환자 입원치료비는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, 의령군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
 - 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(초로기 치매환자 등)
- **제6조(지원절차)**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치료 등 치매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군수에게 치매관리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**제7조(치매상담센터의 설치)** ① 군수는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(이하"치매상담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-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치매환자의 등록・관리
- 2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- 3.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
- 4.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・관리
- 5. 치매조기검진
- 6.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을 따른다.
- 제8조(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)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9조(준용규정)** 치매관리 비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〈조례 제1959호, 2015.08.05.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